

**증평군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** [ 2003. 12. 15 ]  
 규칙 제21호  
 개정 2005. 4. 22 규칙 제 82호  
 개정 2007. 3. 26 규칙 제117호  
 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  
 개정 2008. 3. 7 규칙 제135호  
 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  
 일부개정 2015. 1. 1 규칙 제256호  
 (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  
 일부개정 2023. 6. 30 규칙 제43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증평군 포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3. 6. 30]

제2조(추천)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·과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읍·면장이 추천한다.

〈개정 2005. 4. 22, 2007. 3. 26, 2008. 3. 7〉

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, 직무내용,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③ 「증평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「모범공무원 규정」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. 〈개정 2015. 1. 1, 2023. 6. 30〉

제3조(선발) 모범공무원은 증평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.

제4조(인사상의 특혜)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. 〈개정 2023. 6. 30〉

1.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
2. 읍·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에 우선 전입

제5조(모범공무원 수당 지급)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 규정」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. 〈개정 2023. 6. 30〉

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6조(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)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. 6. 30>

1. 퇴직 또는 면직된 때
2. 징계처분을 받은 때
3.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
4. 관할 증평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진출된 때

#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5. 4. 22 규칙 제82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3. 26 규칙 제117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

⑭ 증평군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실·과·단”을 “실·단·과”로 한다.

⑮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(2008. 3. 7 규칙 제135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이 규칙의 개정으로 다른 규칙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15. 1. 1 규칙 제256호,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6. 30 규칙 제439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